

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4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
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현행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외에 청소행정과장을 분임기금
운용관으로 지정(안 제1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 및 같은 법

시행령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조례안 붙임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
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

제1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분임기금운용관 : 청소행정과장

제17조제2항 중 “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”을 “기금관리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회계 공무원)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·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 1. (생략) <u><신설></u> 2. (생략)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 여야 한다.	제17조(회계 공무원)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공무원을 둔다.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분임기금운용관 : 청소행 정과장 2. (현행과 같음) ② 기금관리공무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~ ③ 생략

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
제4조(기금의 수입과 지출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

② 생략

소과 실·과		청소행정과
입 안 자	과 장	박 호 형
	계 장	박 정 현
	담 당 자	윤 종 영 (480-5244)